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1345호 2018. 7. 30.(월)

공 고

○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

기 타

○ 시정알림판 ----- 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18-1006호

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도시계획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30일

목 포 시 장

1. 조 례 명 : 목포 도시계획조례

2. 개정 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 내용

가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3건)

-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(안 제28조)
-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규정(안 제33조)
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야영장 시설 건축 허용(별표 18)

나. 운영상 미비점 보완(1건)

- 발전시설(태양광)에 대한 이격거리제한 등 허가기준 개정(안 제17조의4)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
7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의견 없음
 -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: 안 제17조의4, 제33조
 -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반영 : 안 제28조, 별표 18

8. 예산사항 :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

9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7. 30. ~ 8. 20.(21일간)

10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11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 없음없음

12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. 8. 20.까지 목포시장(도시계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89), 직접방문 등

※ 보내실 곳 : 우) 58613, 목포시 양을로 203번지(용당동) 목포시청(도시계획과)

13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(전화:061-270-8414, FAX:061-270-35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2차선”을 “폭원 6미터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

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
2.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
3.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(다만, 공유수면 및 저수지,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

제28조 제목 “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”을 “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단,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경관지구”를 “자연경관지구·특화경관지구”로, “건폐율은”을 “건축물의 건폐율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 중 “경관지구”를 “자연경관지구·특화경관지구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

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.

[별표 18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타목 중 “수련시설”을 “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, 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(본문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4(발전시설 허가기준)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</u> 1. 「도로법」이 적용되는 도로(국도, 지방도, 시도 등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)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 2.~7.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1.~4. <신 설> ③ ~④ (생 략)	제17조의4(발전시설 허가기준) ① ----- ----- -----<단서 삭제> 1. ----- ----- 폭원 6미터 이상----- -----. 2.~7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.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3.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(다만, 공유수면 및 저수지,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③ ~④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 1.~15. (생 략)	제28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----- ----- ----- 단,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~15. (현행과 같음)
제33조(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)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<u>경관지구</u> 안에서 건축하는	제33조(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) ① ----- ----- 자연경관지구·특화경관지구 -----

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② <신 설>

건축물의 건폐율은 -----. 다만, -----
자연경관지구·특화경관지구 -----

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(별표)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8] <개정 2014. 8. 18., 2017. 7. 13.>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) (제27조제16호 관련) 가.~카. (생 략)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<u>수련시설</u> 파.~터. (생 략)	[별표 18] (현행과 같음)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) (제27조제16호 관련) 가.~카. (현행과 같음) 타. ----- <u>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)</u> 파.~터. (생 략)

목포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의견

주 소 :

성 명 :

전 화 :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시 정 알 림 판

제10회 목포문학상 작품 공모

- 응모기간 : 2018. 8. 1.(수)~8. 31.(금) ※ 우편접수만 가능, 마감당일 소인 유효함
- 응모자격
 - 본 상 : 전국
 - 남도작가상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
- 공모분야 : 소설 1편, 희곡 1편, 시(시조포함) 3편, 수필 2편, 동시 3편
- 공모소재 : 남도 문화, 민속, 문학, 인물 등과 관련한 소재
- 접 수 처 : 목포시 남농로 95, 목포문학관
 - ※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학관 홈페이지(munhak.mokpo.go.kr) 참조



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☎ 061-270-8400, 8412

찾아가는 배달강좌 안내

- 찾아가는 배달강좌란? 직장동료 및 이웃과 함께 원하는 장소에서 강좌를 배울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
- 사업기간 : 3월~11월
- 신청대상 : 목포시민 및 관내 사업체 근무 직장인(7인 이상)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(강좌신청서, 강좌신청자 명단, 강의요약서) 기재 후 방문 및 우편접수
 - ☞ 접수처 : 목포시 수문로 32, 트윈스타 행정타운 4층 (우 58724)
 - ☞ 목포시평생학습센터(lifelong.mokpo.go.kr) ⇨ '공지사항'에서 서식 다운로드
- 지원내용 : 강사비 지원(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 파견)
 - 학습프로그램 : 팀별 15회 지원(외국어, 정보화교실 등), 오락프로그램 : 팀별 10회 지원(노래, 요가, 댄스 등)

교육체육과 ☎ 061-270-8532

「오늘의 수목」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.

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

2018. 9. 1.(토) - 10. 31.(수) 목포(목포문화예술회관) · 진도(운림산방) 일원

- 기 간 : 2018. 9. 1.(토)~10. 31.(수) (2개월)
 - ※ 전야제 : 2018. 8. 30.(목) 진도운림산방, 향토문화회관
 - ※ 개막식 : 2018. 8. 31.(금) 17:00 목포문화예술회관
- 참 여 : 15개국 작가 250여명(국내 200, 해외 50)
- 주요내용
 - 전 시 : 현대수목의 재창조(목포), 전통수목의 재발견(진도)
 - 부대행사 : 수목화교육·체험·이벤트(아트마켓, 수목 캘리그래피 등) 프로그램 운영
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(sumukbiennale.org) 참조

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 ☎ 061-280-5879

시 정 알 림 판

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 무료검사 안내



- 지원대상 :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12주 이내 임신부
- 검진항목 : 임신반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, 혈액형, 빈혈, 매독, 당뇨, 단백뇨, 풍진, 에이즈
- 접수방법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(1층) 방문접수
- 구비서류 : 신분증

목포시보건소 ☎ 061-270-3215

치매어르신 지문사전등록 안내

- 지문사전등록제란? 경찰청에서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,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
- 신청대상 : 치매어르신 누구나
- 신청방법
 - 오프라인 : 치매안심센터(수문로 32, 3층) 및 경찰서 지구대, 파출소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
 - 온 라 인 : 안전드림 홈페이지(www.safe182.go.kr)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
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,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등록증

목포시치매안심센터 ☎ 061-270-4271~4
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

- 가입대상 : 1층 일반·휴게음식점(100㎡ 이상), 숙박업소, 15층 이하 아파트(의무관리대상), 주유소, 물류창고, 여객자동차터미널, 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경륜장, 경정장, 장외매장, 경마장, 장외발매소, 지하도상가, 국제회의시설, 전시시설
- 보상범위
 - 신체피해 :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
 - 재산피해 : 10억원까지 보상
 - ※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(원인불명 사고, 방화 등)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
 - ※ 자연재난(지진 등)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
- 가입기한
 - 신규 시설 :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
 - 기존 시설 : 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가능한 빠른 가입 요망
 - ※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(18. 9. 1일 부터)



콜센터 ☎ 02-3702-8500 안전총괄과 ☎ 061-270-8648